

사건번호	2018허4607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276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항균 기능을 갖는 봉안단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ABS수지 재질의 라이너에 소성 패각분말로 된 천연항균제를 첨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원고의 특허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선행발명과 이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제시된 등록특허공보 제510083호, 제847095호, 제1199511호, 제1199512호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종래기술로 기재된 등록특허공보 제510083호, 제847095호, 제1199511호, 제1199512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모두 공지되었다.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에 설치되는 문짝은 모두 착탈식으로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4의 봉안단의 라이너함도 개구면을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에 개폐 가능한 문짝을 설치하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주지관용기술로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결로현상으로 봉안함 수납함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여 곰팡이나 미생물이 쉽게 번식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안함 수납함을 소성 패각분말로 된 천연항균제가 첨가된 ABS수지 재질로 만든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을 뿐,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에 개폐 가능한 문짝을 설치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에 설치되는 문짝을 개폐 가능한 구조로 할지, 밀폐 구조로 할 것인지(차이점1)는 통상의 기술자가 봉안함 수납함의 사용 목적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 1에 개폐 가능한 문짝을 부착하는 주지관용의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선행발명 1의 BMC 복합재료를 ABS수지 재질로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본래의 과제 해결 수단을 제거하여 그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변경을 쉽게 생각해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선행발명 1에는 ABS수지 재질의 라이너는 그 내부 물품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가스를 주입하거나 진공 가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ABS수지 재질의 라이너에 소성 패각분말로 된 천연항균제를 첨가(차이점2)한다는 발상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 분야가 달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키워드: 진보성, 봉안단, 등록무효, 통상의 기술자

사건번호	2018허4737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75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3D 텍스트를 3D 콘텐츠와 결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현재 프레임의 정보만 이용하는 기술과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기술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환경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출원을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거절결정하고, 특허심판원은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시차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현재 프레임 또는 이전 프레임 중 어느 하나만 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시차 정보를 함께 이용하나, 선행발명 1은 현재 프레임 또는 이전 프레임 중 어느 하나만 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선행발명 2는 '1 화면 내의 최대값 또는 현재부터 일정 시간 범위 내의 최대값 깊이 정보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중 '화면 내의 최대값'은 현재 프레임의 최대값을 의미하며, '현재부터 일정 시간 범위 내의 영상신호 최대값'은 현재 프레임부터 과거 일정시점까지의 프레임들의 최대값을 의미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는 3D 콘텐츠에 특정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 '현재 프레임의 최대값을 이용하는 구성'과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의 최대값 모두를 이용하는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위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D 콘텐츠 동영상 처리 분야에서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뿐만 아니라 다음 프레임의 정보까지 이용하는 기술은 널리 사용되는 기술상식이고, 3D 콘텐츠 동영상 처리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적어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2D 동영상 처리 기술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프레임의 정보만 이용하는 기술과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기술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환경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시차 정보를 이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2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으나, 아래 4)의 가)항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시차 값(시차 정보)을 이용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3D텍스트, 진보성, 선행발명, 거절결정

사건번호	2018허5259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6당3615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REMITITE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인용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그 상표나 상품이 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고, 경제적 관련관계가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은 'REMITITE', 'Remitite'와 같이 영문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소문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철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선사용상표가 알려진 정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관련 매출액의 규모, 관련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의 범위, 삼성레미타이트 및 원고의 거래관계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2. 10. 당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주로 조선업에서 사용되어 온 것인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은 건축업 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그 사용분야가 조선업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모두 고무 슬리브, 실리콘 실란트 등 충전, 밀봉, 접착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들 내지 그 서비스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유사하므로 그 사이에 적어도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관련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업이 원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키워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경제적 관련성,

사건번호	2018허5457	사건명	등록정정(특)
심판번호	2017정9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고효율 가스 연소용 버너의 공기 공급장치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각하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효로 된 특허의 정정을 구하는 심판은 그 정정의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후28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고,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는 그 정정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정정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키워드: 각하, 소의이익, 법률상 이익, 무효심결

사건번호	2018허6405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6당392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인용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나 원고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그 출원경위, 수출, 건강식품시장 중 홍삼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매출액, 광고, 수상내역, 인터넷 검색 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1. 24. 당시 그 대상 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던 상표에 해당한다.

유사여부를 대비하면, 호칭의 경우, 선등록상표는 '정관장 홍삼'으로 불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강화 홍삼' 또는 '강화 홍삼 조삼원'으로 불리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안으로, 마주 보는 2개의 인삼 뿌리와 위로 뻗은 두 개의 인삼 줄기가 외곽을 형성하고, 하단은 둥근 반원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각형 외곽의



좌.우측변에 인삼 잎을 형상화 한 별 또는 인삼 잎 형상을 수 개씩 배치한 점( , ), ③ 좌.우측변에 대칭되게 배치된 각 인삼 뿌리의 경우, 외곽선은 노란색, 내부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인삼 뿌리의 중앙 부분이 안쪽으로 꺾여 있으며, 잔뿌리들은 각각 안쪽을 향해 뻗어 있어, 의인화의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사람이 앉아 있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점( , ), ④ 사각형의 내부에 큰 글씨로 '紅蔘(홍삼)'이라

는 한자를 배치한 점( , ), ⑤ 인삼 뿌리 사이의 안쪽 여백에 암적색의 여백과 대조를 이루는 흰

색 내지 아이보리 색으로 숫자 '6'을 배치한 점( , ), ⑥ 상단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배치한 점



( , ), ⑦ 하단의 반원 형상 안에 'KOREAN RED GINSENG'을 영문으로 표기한 점, ⑧ 도형, 문자, 배경에 부여된 색상에 있어서도 붉은 색 계열의 색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상표의 외관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층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등록상표 또는 원고의 상품이 쉽게 연상되거나 선등록상표 또는 원고의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키워드: 상표, 정관장,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건번호	2018허6627	사건명	권리범위확인(디)
심판번호	2017당3832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자석완구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인용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 실시 디자인에 대하여 적극 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서로 동일·유사하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대비 및 검토한다.

위 대비표에 의하면,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는 ① 전체적으로 직각이등변삼각형 프레임의 형상으로서 각 모서리 부분의 3개의 각이 모두 둥글게 처리된

구분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4
정면도		

점, ② 중앙에 직각이등변삼각형 형상으로 3개의 각이 모두 둥글게 처리된 개구부가 있고 그 전체에 대한 비율도 거의 같은 점, ③ 프레임의 3변은 그 폭이 동일한 기둥으로 형성되고 각 변의 중앙부에 자석삽입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석삽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음각의 모양이 형성된 점, ④ 각 음각부분의 개략적인 모양 및 그 모티브가 유사한 점 등에서 공통된다.

비록 양 디자인에서 3각의 내측에 형성되어 있는 음각부분의 세부적인 모양, 자석삽입부의 크기 및 위치 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키워드: 권리범위확인, 확인대상디자인, 자유실시디자인

사건번호	2018허6764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2351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용 데크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통상의 기술자는 적재의 편의성을 위해 상부 돌출부의 높이를 하부 돌출부 보다 낮게 형성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구성요소 4의 트러스 거더는 노출부가 보강리브 높이에 비하여 낮게 형성됨으로써 바닥판이 여러 층으로 적재될 경우 노출부가 보강리브 사이의 골에 위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3의 래티스 바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의하거나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4의 [도 5] 또는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사항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거푸집의 기능을 하면서 타설된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그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부를 이루게 하며, 제조가 용이하고 제조단가가 절감되어 전체적인 콘크리트 시공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적재의 편의를 위해 트러스 거더의 노출부 높이를 보강리브 높이 보다 낮게 형성한 데에 주된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 아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효과' 부분에도 트러스 거더의 노출부 높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선행발명 3의 12면의 '연구 결과' 부분에는 래티스 바의 높이가 낮아도 합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3면의 '장시간 교량의 엘비데크 적용단면' 도면에는, 래티스 바의 노출부가 콘크리트 바닥판의 하부에 형성된 보강리브의 높이 보다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을 보고 적재의 편의를 위해 래티스 바의 노출부를 보강리브 보다 낮게 형성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③ 게다가 선행발명 4에는, 하부 Pca상판의 누름콘크리트의 높이가 상부 Pca상판의 리브 높이보다 낮게 형성됨으로써 하부 Pca상판의 누름콘크리트가 상부 Pca상판의 리브 사이의 공간에 위치되어 바닥 Pca판(A)이 서로 적층되는 사항이 도시되어 있다. 선행발명 5에도, 하부 기초 슬래브상부에 돌출된 볼트가 상부 기초 슬래브하부에 돌출된 돌기부) 사이의 공간에 위치되어 기초 슬래브가 여러 층으로 적재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도 "볼트의 돌출 길이를 돌기부의 높이 이하로 설정해 두면, 볼트가 장애물이 되지 않아 도시된 대로 기초 슬래브를 적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는 적재의 편의성을 위해 상부 돌출부의 높이를 하부 돌출부 보다 낮게 형성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시공용 데크, 등록무효,

사건번호	2017허8381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7당102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선행디자인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선행디자인 1에 개시된 상부 브라켓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09. 2. 19. 공지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① 황민구 작성의 감정서에는 “삼성 Anycall SCH-W460의 날짜 설정을 2008-02-09로 변경하고 샘플 사진을 촬영하여 P-1, P-2 파일명으로 저장한 결과 휴대폰에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의 정렬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 되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추출하여 촬영일자를 변경하고 휴대폰의 날짜를 촬영일자와 다르게 설정한 상태에서 test-1, test-2 파일명으로 저장한 결과 휴대폰에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의 정렬 순서는 역시 가장 마지막이 된다. 어떠한 외부 이미지가 핸드폰에 저장될 경우 데이터 정렬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된 브라켓 사진 3장의 파일 정렬순서를 확인한 결과 그 파일의 정렬 순번이 “26, 47, 6”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진 파일의 정렬 순서도 생성날짜의 선후와 관계 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2017. 8.경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이정수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이정수는 2017. 8. 17.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진 촬영 시점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애니콜 PC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정렬 방식은 파일이 생성된 순서인 정렬번호 순서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시점 및 파일의 이름, 파일의 크기와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애니콜 PC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P090219003.jpg’, ‘P090219005.jpg’ 파일의 정렬 순서만으로 사진 촬영 날짜 조작이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한컴지엠디의 감정서에는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으로 파일이름은 수정할 수 있지만 촬영 일시와 같은 다른 속성값은 수정할 수 없다. 또한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으로는 파일의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사용자가 휴대폰 시간 설정메뉴에서 날짜를 수동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휴대폰 감정결과에 따르면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그 파일의 저장 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렬 순서, 촬영일자 등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성열이 공사 현장에서 브라켓을 습득한 경위 및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사진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에 나타난 브라켓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사건번호	2017허8398	사건명	등록무효(디)
심판번호	2017당1025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디자인	권리명칭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 볼 수 없어 선행디자인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선행디자인 1에 개시된 상부 브라켓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09. 2. 19. 공지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① 황민구 작성의 감정서에는 “삼성 Anycall SCH-W460의 날짜 설정을 2008-02-09로 변경하고 샘플 사진을 촬영하여 P-1, P-2 파일명으로 저장한 결과 휴대폰에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의 정렬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 되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을 추출하여 촬영일자를 변경하고 휴대폰의 날짜를 촬영일자와 다르게 설정한 상태에서 test-1, test-2 파일명으로 저장한 결과 휴대폰에 나타나는 디지털 이미지의 정렬 순서는 역시 가장 마지막이 된다. 어떠한 외부 이미지가 핸드폰에 저장될 경우 데이터 정렬 순서상 마지막에 배치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된 브라켓 사진 3장의 파일 정렬순서를 확인한 결과 그 파일의 정렬 순번이 “26, 47, 6”으로 기록되어 있고,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진 파일의 정렬 순서도 생성날짜의 선후와 관계 없이 배열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2017. 8.경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 이정수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이정수는 2017. 8. 17.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진 촬영 시점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애니콜 PC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정렬 방식은 파일이 생성된 순서인 정렬번호 순서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시점 및 파일의 이름, 파일의 크기와 같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애니콜 PC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P090219003.jpg’, ‘P090219005.jpg’ 파일의 정렬 순서만으로 사진 촬영 날짜 조작이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원상분석연구소 감정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한컴지엠디의 감정서에는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으로 파일이름은 수정할 수 있지만 촬영 일시와 같은 다른 속성값은 수정할 수 없다. 또한 Anycall PC Manager Plus 프로그램으로는 파일의 조작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사용자가 휴대폰 시간 설정메뉴에서 날짜를 수동으로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휴대폰 감정결과에 따르면 조성열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그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렬 순서, 촬영일자 등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조성열이 공사 현장에서 브라켓을 습득한 경위 및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사진촬영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에 나타난 브라켓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사건번호	2017허8411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심판번호	2016당2019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9,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7 및 9,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는 칸막이의 일측으로부터 T형으로 직교되기 위한 상,하 위치에 상부 상부 캡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만곡편부에 대응되는 곡면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칸막이 벽체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되어진 상부 연결부재이고, 구성요소 3은 걸레받이 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면에 대응되는 지지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걸레받이 부재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된 하부 연결부재인데,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7의 각 구성요소로는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 TOP과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하부코너 BASE가 개시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 및 하부 연결부재는 각각 곡면부와 지지부를 구비하고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형성하여 칸막이 벽체와 걸레받이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반면,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 하부코너 BASE는 양 측면에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내측 중앙에 형성된 삽입홈부와 곡면부 및 지지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7은 벽체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하는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는 각각 서로 양측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삽입홈부를 갖지 않고,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에 접하지 않는 벽체의 중간 부분에 AL. WALL CHANNEL을 구비하고 있어 이것이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삽입홈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9에는 기설벽에 접촉되게 설치되어 칸막이벽의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상하로 길게 뻗은 칸막이벽 연결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가 각각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갖고 곡면부 및 지지부를 갖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우선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하여 그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하여야 할 것인데, 선행발명 7에는 이와 같이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함으로써 상부 및 하부 연결부재가 각각 삽입홈부를 갖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도 상하로 길게 뻗어 있을 뿐 상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하로 길게 뻗어 있는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7의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길게 연장하여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가 갖는 곡면부와 하부 연결부재가 갖는 지지부를 추가로 형성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구조 변경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9,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사건번호	2017허8428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102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9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7 및 9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칸막이의 일측으로부터 T형으로 직교되기 위한 상,하 위치에 상부 캡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만곡편부에 대응되는 곡면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칸막이 벽체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되어진 상부 연결부재이고, 구성요소 3은 걸레받이 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면에 대응되는 지지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걸레받이 부재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된 하부 연결부재인데,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7의 각 구성요소로는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 TOP과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하부코너 BASE가 개시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 및 하부 연결부재는 각각 곡면부와 지지부를 구비하고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형성하여 칸막이 벽체와 걸레받이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반면,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 하부코너 BASE는 양 측면에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내측 중앙에 형성된 삽입홈부와 곡면부 및 지지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7은 벽체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하는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는 각각 서로 양측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삽입홈부를 갖지 않고,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에 접하지 않는 벽체의 중간 부분에 AL. WALL CHANNEL을 구비하고 있어 이것이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삽입홈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9에는 기설벽에 접촉되게 설치되어 칸막이벽의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상하로 길게 뻗은 칸막이벽 연결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가 각각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갖고 곡면부 및 지지부를 갖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우선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하여 그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하여야 할 것인데, 선행발명 7에는 이와 같이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함으로써 상부 및 하부 연결부재가 각각 삽입홈부를 갖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도 상하로 길게 뻗어 있을 뿐 상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하로 길게 뻗어 있는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7의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길게 연장하여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가 갖는 곡면부와 하부 연결부재가 갖는 지지부를 추가로 형성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구조 변경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9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특허, 자유실시기술, 칸막이 벽체의 티형 연결 조립장치

사건번호	2018허3246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251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인용

특허발명은 선행발명1 또는 선행발명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 밖으로 이차 열통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큰 열저항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신장부로서 형성되는 전기도선과 열추출부재와 분리되어 선접합부에 의해 반도체 발광 에미터와 연결되는 전기도선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외부 단자는 칩 캐리어로부터 연장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외부단자는 접속부를 통해 본딩 와이어에 의하여 반도체 칩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은 선행발명 1의 외부단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외부단자도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처럼 반도체 부품 밖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열통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행발명 1의 도 2b로부터 반도체 칩과 칩 캐리어의 바닥 벽부 사이의 열통로는 반도체 부품 밖으로의 최단 열통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도 2b로부터 외부단자는 원뿔대 형태의 트러프를 통해 연장되는 열통로를 갖고, 외부단자는 본딩 와이어로 연결되는 열통로를 가지므로, 칩 캐리어의 돌출부에 의한 제1열통로는 외부단자에 의한 제2열통로에 비해 비교적 짧은 경로길이를 갖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열저항은 도선의 분단 길이가 길수록 증가하게 되므로, 선행발명 1에서 칩 캐리어의 돌출부에 의한 제1열통로는 외부단자에 의한 제2열통로에 비해 작은 열저항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큰 열저항을 갖는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발명 3은 구성요소 4처럼 전기도선이 반도체 방사 에미터로부터 장치 밖으로 이차 열통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도선에 의한 이차 열통로가 열추출부재에 의한 일차 열통로에 비해 큰 열저항을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러나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신장부로서 형성되는 전기도선과 열추출부재와 분리되어 선접합부에 의해 반도체 발광 에미터와 연결되는 전기도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회로패턴의 단부는 방열판에 접속되어 기판의 측단면으로부터 하면에 걸쳐서 전극 단자부를 형성하고 있고, 회로패턴은 와이어에 의해 발광 다이오드 칩과 연결되고 전극 단자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은 선행발명 3의 회로패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행발명 3의 회로패턴도 구성요소 4의 전기도선처럼 표면 실장형 발광 다이오드 밖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는 열통로를 제공한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을 통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사건번호	2018허3833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194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인장강도를 보강한 철근용 커플러
선고일	2018. 12. 13.	선고결과	기각

특허발명은 선행발명4에다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함으로써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2는 커플러의 중공부 내주면부에 다줄 나사가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1), 구성요소 2는 인장강도 보강부의 좌우측에 미끄럼 방지수단이 형성되어 있는 점(차이점 2)에서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다.

차이점 1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중공부 내주면부에 다줄 나사가 형성된 커플러는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에 해당된다. 또한 선행발명 2는 '나사 마디 철근용 연결구'에 관한 것인데, 그 나사 마디 철근은 '다줄 나사 마디 철근'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연결구 내주면부에 다줄 나사가 형성된 사항이 도시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발명의 종래 기술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① 나사의 1회전시 축방향 전진거리는 그 줄수에 비례하므로 다줄 나사의 경우 체결속도가 그 만큼 빨라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인 점, ② 커플러와 철근의 체결속도 향상시켜 체결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에 해당되는 점, ③ 선행발명 4의 '철근 이음관'도 특허발명의 '철근용 커플러'나 선행발명 2의 '철근용 연결구'와 같이 철근과 철근을 기계적 이음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④ 철근과 철근을 기계적 이음하는 장치에 있어서, 내주면부에 나사를 형성하거나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하는 것은 모두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서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철근과 커플러의 체결속도 향상이 더 필요한 경우 선행발명 4의 철근 이음관 내주면부를 선행발명 2나 선행발명 3과 같은 다줄 나사로 변경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다 선행발명 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차이점 2와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커플러의 외주면에 미끄럼 방지수단을 형성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다. 또한 선행발명 2의 나사 마디 철근용 연결구에도 미끄럼 방지수단인 다각형의 스페너 걸림부가 형성되어 있다. 특허발명의 종래 기술에 기재된 미끄럼 방지수단은 커플러의 전체 외주면에 형성되어 있고, 선행발명 2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중앙 부분에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제1항 발명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인장강도 보강부의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2에서 "스페너 걸림부는 연결구의 중앙부에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구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형성되어도 좋고, 전체 길이가 원통형 등의 스페너 걸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도 좋다."라고 기재된 바와 같이, 미끄럼 방지수단은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그 위치를 변경하여 형성할 수 있고, 달리 그 위치로 인한 더 나은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커플러의 체결 작업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주지관용기술의 미끄럼 방지수단을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다 주지관용기술의 '미끄럼 방지수단'을 단순히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인장강도를 보강한 철근용 커플러

사건번호	2017허8497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383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밀폐형 컨베이어 장치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특허발명에 기재불비 및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에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발명을 문언 그대로 보면 체인에 고정공이 형성되고 고정공에 볼트와 너트를 체결함으로써 체인과 벨트가 결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체인과 벨트의 결합관계를 나타낸 도면에는 체인이 벨트와 직접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과 연결된 연결편에 고정공이 형성되어 이를 통해 체인과 벨트가 결합하는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고정공을 체인 몸체에 직접 형성하면 체인 컨베이어 자체가 작동할 수 없게 되므로 체인으로부터 연장된 연결편에 고정공을 형성하여 체인과 벨트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이다.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하여 보면, 특허발명의 경우 스라트가 체인과 벨트의 연결 기능 및 벨트의 처짐 방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연결대가 체인과 벨트의 연결기능을 수행하고, 탄성롤러가 벨트의 처짐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차이점 1), 특허발명은 스라트가 설치되지 않은 체인에는 지지블록이 설치되는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에는 이러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 특허발명의 스라트에는 나타나 있는 양측면부, 보강편 및 가이드부의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3), 특허발명에는 컨베이어 양 측부에 체인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스커트 외에 사이드 가이드가 추가로 구비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1에는 그에 대응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4),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모두 컨베이어가 경사지게 설치되는 경우 벨트로 이송되는 제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벨트의 상부면에 어태치먼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허발명의 경우 그 세부구성까지 제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고무판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시가 없다는 점(차이점 5),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모두 제품 이송 시 분진이나 이송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틀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에는 틀체의 세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점(차이점 6), 특허발명은 지지블록이 폴리에틸렌 나일론 재질로 이루어진 것인 데 비해 선행발명 1에는 지지블록에 대응되는 구성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차이점 7)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 1, 3, 5, 6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 2, 7의 경우 선행발명 5의 하부아암은 체인과 벨트의 신속한 결합 및 해제를 위한 장치의 한 구성요소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지지블록과 달리 체인의 마모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선행발명 1에 5를 결합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결합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다. 또한 차이점 4는 선행발명 1에는 가이드판 외에 추가로 벨트의 상부쪽에 사이드 가이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동기나 암시도 없고, 사이드 가이드에는 컨베이어 장치의 굴절부위에서도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결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키워드: 특허, 등록무효, 기재불비, 선행발명간 결합, 컨베이어

사건번호	2018허5860	사건명	등록취소(상)
심판번호	2016당290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에 의하여 불사용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즉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의 등록상표 와 실사용상표 는 각 상표가 동일한 형상의 나무 도형 아래 'NATURE'S WAY'라는 문자 표장이 배열되어 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공통되고, 영어 문자 중 일부의 대·소문자 여부와 나무 도형 색상의 차이, 바깥 부분의 테두리의 유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측의 실사용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

피고는 2009. 9. 25. 호주 법인인 PAC사와 'NATURE'S WAY' 상표에 관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22.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에 관해 제1류, 제5류, 제29류의 일정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2012. 1. 12.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상표의 사용권자인 PAC사는 2015. 5. 5. Dual Forms사와 '대한민국 내'에서 "Nature's Way" 브랜드 제품의 배포(distribution)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6. 4. 13.에는 Dual Forms사에 'NW KSVG OMEGA+MULTI 50s', 'NW VG WOMENS MULTI 100s' 등의 상품을 공급, 판매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하였다. Dual Forms사는 이후 그 웹사이트에 '네이처스 웨이 키즈 구미 영양제' 메뉴에 등록상표의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제품들을 게시하고 판매하였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비타민제 제품과 식용 어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 제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9. 22.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키워드: 상표, 불사용취소, 상표법 제 119 조 제 1 항 제 3 호

사건번호	2018나1664	사건명	손해배상등
제1심판결	서울중앙 2017가합580144	제1심결과	기각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음료용기용 캡슐캡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항소인용

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356특허의 출원번호는 '10-2013-0128262'임에 비해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10-2013-0113613'은 301특허의 출원번호이다. 원.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기재는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이 아니라 301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가리킨다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선결되어야 할 쟁점이다.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쟁점기재는 '356특허를 이용한 3피스 와우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통해서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3피스 와우캡에 덧씌우는 외부캡을 공급하던 ♥♥♥♥♥♥가 체결한 협약서도 이 사건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와 동일한 기재오류가 있었던 점, ② 원고와의 통화내용에서 보듯이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참석한 ◆◆◆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 협약이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위 2건의 협약서에는 국제특허분류번호가 공통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점 및 ④ 당시 ◆◆◆이 301특허를 상용화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나 ♥♥♥♥♥♥가 301특허를 실시한 내부캡이나 외부캡을 생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협약서 중 출원번호 기재 부분도 국제특허분류번호와 마찬가지로 위 청아람 측의 부주의에 의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나머지 특허권자인 피고와도 같은 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 생산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동기와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으로부터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 중 잔금 196,500,000원뿐만 아니라 ◆◆◆에게 공급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도 ◆◆◆으로부터 외부캡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② 2015. 12.경에 이르러 ◆◆◆은 M&A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원고가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이나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다. 또한 피고도 원고에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하는 데에 승낙하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기재 특허를 이용한 별지2 기재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키워드: 특허, 독점공급계약, 음료용기용 캡슐캡

사건번호	2018허3475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247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피자 주문 시스템 및 그 방법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인용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중에서 토핑량에 대응하는 구성은 선행발명 1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선행발명 2에는 추가 가능한 토핑 각각에 대한 가격 및 수량과 그 토핑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이로부터 선행발명 2에 피자 주문시에 주문자가 추가되는 '토핑의 양'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는 기술사항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베이커리 또는 피자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주문자가 기본재료를 선택한 후 추가재료에 기초하여 가상 이미지를 출력한 후, 주문정보를 생성한다는 공통된 기술과제 및 그 과제해결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항 발명은 토핑의 종류, 위치, 모양 외에 순서에 대한 선택에 따라 토핑이 올려진 모습에 대한 가상 피자 이미지를 순서대로 생성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상품 이미지를 순서대로 생성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러나 구성요소 8에서 '순서에 대한 선택'의 의미는 토핑의 종류, 토핑량, 토핑 위치 및 형상정보와 같은 토핑 정보를 주문자가 선택하는 과정 [(d) 단계]과 토핑 정보에 기초하여 가상 피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e) 단계]을 반복함으로써 차례대로 생성되는 가상 피자 이미지들 각각에 연관되는 토핑들이 자연스럽게 순서화 되는 과정에서 그 반복되는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피자의 토핑 순서가 주문 피자 정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즉, 주문된 피자를 조리할 때 올려지는 토핑의 순서를 주문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선행발명 1도 주문자가 데코레이션을 위해 원하는 이미지, 문자 등을 복수 개 선택할 수 있고, 적용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상품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데코레이션을 위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조정하여 다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과 선행발명 1을 대비하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8은 주문자가 원하는 상품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상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선택과 선택된 재료가 반영된 가상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가상의 이미지가 순서대로 주문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을 기초로 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제1항 발명에 이르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용이하다 할 것이므로, 제1항 발명은 결국 그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키워드: 특허, 진보성, 피자 주문 시스템 및 그 방법

사건번호	2018허6078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7당1923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신체 균형 보정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일부인용

심결 중 제20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제15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법 제159조 제2항은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19. 청구의 취지에 '발명 제1052202호의 제1 내지 5항, 제7 내지 16항, 제18 내지 19항을 무효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청구취지를 최종 보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 내지 5항, 제7 내지 16항, 제18 내지 20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0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 부분은 특허법 제159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구성요소 3에서 신체 균형 측정정보와 관련된 소정 이미지로서 척추 균형 틀어짐에 따른 발에 걸리는 압력에 관한 제1 이미지, 척추 골격과 발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제2 이미지 및 인체의 장기와 발 사이의 연관관계에 관한 제3 이미지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표시부에 표시하는 데 반해,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신체 균형 측정정보와 관련된 소정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피검자의 신체 균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검자의 발바닥 체온 정도와 압력 정보만을 측정하고 있고, 피검자의 신체 균형 상태를 보정하기 위한 보정 제품으로 완충신발을 예로 들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정된 완충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 균형을 측정하여 보면, 왼발과 오른발 각각의 평균압력이 49.7%와 50.3%로서 양 발 사이의 압력 편차가 거의 없는 균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바 신체 균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신체 균형 상태는 양 발 사이의 압력 편차가 거의 없는 균형 상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발에 대한 압력 편중과 척추 불균형 등과 같은 신체의 연관관계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 의료 산업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참작할 수 있는 기술 상식으로 볼 수 있다. ③ 선행발명 2도 발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으로 인한 다리, 무릎, 골반, 척추 등의 부조화와 불균형, 즉 발바닥의 압력 편중으로 인한 질환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고객의 발바닥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 그 결과로서 얻어진 발의 형태와 발바닥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 및 안창을 구성하는 안창판에 부착되는 웨지의 종류 및 위치가 퍼스널 컴퓨터의 모니터에 표시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 명세서의 기재로부터 표시부에 표시되는 정보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표시부에 표시되는 구체적인 이미지의 종류 및 선택에 따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제159조 제2항, 진보성, 신체 균형 보정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사건번호	2018허3062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3652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미용 또는 치료 조성물에서의 천연 활성물질의 사용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25항 출원발명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25항 출원발명은 '피부, 점막, 또는 피부 부속기의 보습; 피부, 점막, 또는 피부 부속기의 리페어링 향상; 진피 퍼밍 향상; 노화방지효과;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 감소' 중 적어도 하나를 위한 방법으로 1항 출원발명 등의 조성물을 '피부, 피부 부속기, 점막, 또는 머리카락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25항 출원발명에서 인용하는 1항 출원발명 등은 미용 조성물 또는 미용 조성물의 제조 방법이므로, 25항 출원발명은 미용 조성물을 피부, 피부 부속기 등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25항 출원발명이 1항 출원발명의 미용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25항 출원발명의 조성물이 활성물질, 적용 부위, 적용 방법 면에서 치료 조성물과 동일할 뿐 아니라 미용치료 방법으로 사용되어 치료 효과와 미용 효과가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5항 출원발명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치방법' 또는 '인체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는 예방방법'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25항 출원발명은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미용 용도뿐만 아니라 치료 용도로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②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25항 출원발명의 '리페어링 향상; 진피 퍼밍 향상; 노화방지효과;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dandruff) 감소'는 미용 효과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의미하며, 특히 '리페어링 향상, 피지 분비 조절 및 비듬 감소'는 치료 효과가 주된 목적이고, 미용 효과는 치료에 수반되는 부수적 효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25항 출원발명에 관하여 '본 발명은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피부 등에 도포하여 보습, 노화, 피부 리페어를 위한 미용치료방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④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미용 및 치료 조성물은 모두 동일한 종류 및 동일한 종의 효모에서 얻어진 가수분해된 효모 단백질을 활성물질로 포함하며, 피부 등 적용되는 부위 및 인체에 접촉하는 방법(도포)도 동일한 점, 또한 미용 조성물은 미용과 치료를 동시에 나타내는 '미용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5항 출원발명에서 위와 같은 미용효과와 치료 효과는 서로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비듬은 피지선의 과다 분비, 두피 세포의 과다 증식, 곰팡이의 과다 증식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지루성 피부염의 초기 증상 중 하나이다. 또한, 비듬은 질병 분류표로서 I21.0의 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이는 지루피부염의 하위분류로서 두피지루성 피부염 중 하나이다.

원고는, 25항 출원발명은 전문 의료인이 개입할 필요 없이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자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허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이 반드시 의료법상 의료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25항 출원발명은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주체를 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명세서에도 의료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기재가 없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1항, 산업상 이용가능성, 의료행위

사건번호	2018허3529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2457	심판결과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치아 교정용 스트립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인용

1항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9~18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5는 '홀더가 연마블레이드의 양 측면 및 하단부를 둘러싸도록 절곡하여 연마블레이드가 홀더 사이에 압착되어 밀착 고정되도록 결합하는 방식'(이하 '절곡 압착 방식'이라 한다)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지지용 홀더와 연마부재를 용접에 의해 결합하는 방식'(이하 '용접 방식'이라 한다)이라는 점에서, 양 대응 구성요소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이점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9~18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①선행발명 1의 실시례는 지지용 홀더와 연마부재가 용접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상황 하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른 방식에 의한 결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견고하게 결합시켜 연마부재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용접 방식 이외의 다른 결합 방식의 채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은 용접 방식과 다른 결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만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선행발명 9~16, 18은 금속 판재를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 앞서 본 절곡 압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7은 절곡 압착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밍을 금속 판재를 결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선행발명 9~16, 18은 어느 하나의 판재가 다른 하나의 판재를 감싸도록 절곡되어 압착 결합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5와 결합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특히 선행발명 11, 14~16, 18은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공개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관련 공보이고, 선행발명 17도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인쇄된 기계공작법 관련 교재여서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판재를 결합하는 데 있어 절곡 압착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③다만, 선행발명 9~16, 18은 그 기술분야가 선행발명 1과 다르고, 선행발명 17에는 기술분야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9~16, 18 중에서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서로 일치하는 발명이 거의 없음에도 절곡 압착 방식이 공통적으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곡 압착 방식이 특정 산업 분야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판재를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행발명 17은 대학교 학부에서 수업 또는 자습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여서 수록된 대부분의 기술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재에 수록된 시밍은 판재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절곡 압착 방식은 판재를 결합(접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에 해당하고 실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9~18에 개시된 사항이 선행발명 1의 치과용 연마기의 특정 판재들을 결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2항, 진보성, 치아 교정용 스트립, 절곡 압착 방식

사건번호	2018허3970	사건명	등록무효(상)
심판번호	2017당370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雪原狼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등록상표 雪原狼이  와 유사하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상표가 ‘雪原’ 부분과 ‘狼’ 부분이 결합한 일체로서만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등록상표 중 ‘雪原’ 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등록상표 ‘雪原狼’은 한자 ‘雪’(눈 설), ‘原’(언덕 원, 근원 원) 및 ‘狼’(이리 랑)이 띄어쓰기 없이 가로로 병기된 문자상표이다. ② ‘雪原狼’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로서 전체적으로 ‘눈 덮인 들판 위의 이리’ 등의 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념이 ‘雪原’과 ‘狼’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雪’과 ‘原’은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뜻과 음을 직감할 수 있는 쉬운 한자로 보이고, ‘雪原’은 ‘눈이 뒤덮여 있는 들판’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중국식 백주 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식별력도 있다. 반면 ‘狼’은 읽기 1급 및 쓰기 특급에 해당하는 어려운 한자이며,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영화, 게임, 산 및 섬의 명칭 등으로 한글 ‘랑’ 및 그 한자 ‘狼’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례만으로는 한자 ‘狼’이 자주 사용되는 한자여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그 뜻과 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등록상표 1  및 선등록상표 2 의 요부는 모두 ‘雪原’이라는 문자 부분이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외관면에서 볼 때 글자체, 글자의 배열 및 테두리 내지 바탕 도형의 존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요부가 모두 한자 ‘雪原’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들 표장에서 ‘雪原’ 부분의 글자체나 글자의 배열이 시각적으로 ‘雪原’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식별력과 별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의 각 요부는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

선등록상표 1은 그 요부인 ‘雪原’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이고, 선등록상표 2 역시 요부이자 문자 부분인 ‘雪原’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原’ 부분 역시 ‘雪原’으로 호칭,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인 ‘雪原’ 부분은 선등록상표 1, 2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결국 등록상표는 그 요부가 선등록상표 1, 2와 외관 면에서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다.

키워드: 상표, 구 상표법 7조 1항 7호, 유사 판단, 요부, 설원

사건번호	2018허4478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6원88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오디오 애니메이션 장치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1항 출원 발명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3~6, 8과 각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RF 신호를 통해 오디오 신호를 비생물모형(완구)이 수신하여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구성요소 3~6, 8의 증폭기, RF 송수신기, 수신안테나와 같은 RF 신호를 송수신하는 세부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3~6, 8의 증폭기, RF 송수신기, 수신안테나와 같은 RF 신호를 송수신하는 세부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선행발명 1은 음향신호를 사용하고, 상호 작용하는 완구에 관한 것이며, 선행발명 2는 무선송수신장치를 이용한 대화형 인형에 관한 것으로, 선행발명 1,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2개의 인형이 각각 다른 고주파를 송수신함으로써 상호 대화할 수 있는 무선송수신장치를 이용한 대화형 인형이 나타나 있고, 무선송수신장치의 세부 구성으로 무선송신부, 무선수신부, 안테나, 증폭기, 스피커가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6 및 8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RF 통신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적 구성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행발명 1에도 이미 완구와 완구 사이 또는 컴퓨터와 완구 사이에 RF 통신이 이용되는 실시예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서 완구와 완구 사이 또는 컴퓨터와 완구 사이에 RF 통신을 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거나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선 송수신장치의 세부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채용하는 것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와 같은 무선 송수신장치의 세부 구성을 선행발명 1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적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1항 출원발명은 오디오 신호를 독립적이고 동시에 출력하며, 비생물 모형에 설치된 스피커가 수신된 오디오 신호를 그대로 출력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경우 완구는 컨트롤러가 보낸 신호에 응답하여 새로운 신호를 발생시킬 뿐 컨트롤러가 보낸 신호를 그대로 출력한다거나 독립적이고 동시에 출력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서도 분리된 채널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음성신호가 각각의 완구에 독립적이고 동시에 제공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4 내지 8호 증에도 외부의 제어수단이나 오디오 시스템으로부터 전송된 음성 등이 복수의 인형에 각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재생되어 각 인형들이 대화하거나 노래하는 것을 연출하는 기술이 나타나 있다. 을 제4호증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소개된 기술이고, 을 제5호증의 1, 2, 3에 소개된 완구들은 1980년대부터 널리 시판되어 홍보된 테디 렉스핀과 그러비라는 인기완구이며, 을 제6호증은 1987년에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이고, 을 제7호증은 1990년에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이며, 을 제8호증은 2000. 1. 1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1항 출원발명에서 별개의 3차원 비생물 모형에 설치된 각각의 스피커에 서로 '독립적'이며 '동시적'으로 오디오 신호를 출력하는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2항, 진보성, 오디오 애니메이션 장치

사건번호	2018허4638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15원5444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건조 분말 약제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기각

16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에서는 입자상 유효성분이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인 반면, 선행발명 1의 모델 약제는 플루오레세인 소디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선행발명 1에서 모델 약제인 '플루오레세인 소디움'을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인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로 변경함으로써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①선행발명 1에는 입자크기분포의 조절이 건조 분말 흡입제의 성능조정과 폐 표적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자크기분포를 조절하여 건조 분말 흡입제의 폐 침착, 표적화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에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모델 약물이 아닌 실제 의약품질에 대해서도 입자크기분포를 조절하여 건조 분말 흡입기에 사용되는 약제학적 건조 분말 조성물의 폐 침착률 및 표적화의 향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선행발명 1에서 모델 약물로 사용된 플루오레세인 소디움을 실제 인체 활성을 나타내며 건조 분말 흡입기에 사용되는 약제로 대체할 충분한 기술적 동기가 있다. ②선행발명 2에는 건조 분말 흡입기에 사용되는 약제학적 건조 분말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제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가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다. 더욱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를 포함하는 건조 분말 흡입기용 제제가 다수 존재한다. ③선행발명 1에서 모델 약물인 플루오레세인 소디움을 선행발명 2의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로 치환하는 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구성요소 2는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에 근거하여 사전 분류된 추가의 입자상 성분'으로 '추가의 입자상 유효성분인 1.0 내지 5.0 μ m의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를 갖는 살메테롤 지나포이트' 및 '입자상 미세 락토오스 담체'를 포함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사전 분류된 추가의 입자상 성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함으로써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①선행발명 2에는 건조 분말 흡입기용 약제학적 건조 분말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제로 살메테롤 및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의 조합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 약제의 조합은 흡입에 의해 투여하기 적합한 건조 분말 형태로 1 내지 5 μ m의 공기역학적 직경을 가지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흡입가능한 조성물에 부형제로 락토오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개 이상의 부형제 입자 크기 범위를 함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재되어 있다. ②선행발명 3의 "미세 입자의 부가로 인한 흡입 락토오스 입자의 정전하 변화", "삼원 상호작용 혼합물의 에어러졸 분산에 관련된 입자 상호 작용"과 같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흡입 제형에서 추가의 입자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 입자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흡입 제형의 흡입 성능이 변화할 수 있음이 우선일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이미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는 건조 분말 흡입기에 사용되는 약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의 복합제제도 알려져 있었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2항, 진보성, 건조 분말 약제

사건번호	2018허6245	사건명	등록무효(특)
심판번호	2016당3223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콘크리트보강용 이형봉강의 연결단부 가공방법과 이 방법에 의해 가공된 이형봉강 및 이형봉강의 연결구조
선고일	2018. 12. 14.	선고결과	인용

4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3은 전조 성형공정은 전조 성형나사부에서 리브 및 마디에 인접한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을 점차 크게 형성한 것인데,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구성요소 3은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전조 성형나사부의 통상의 나사산의 골지름보다 점차 크게 형성되는 구성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조 성형나사부에서 상기 리브 및 마디에 인접한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을 도 2에서와 같이 점차 크게 하여 응력집중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계부의 나사산의 골지름이 점차 크게 형성되는 구성은 응력집중현상을 억제하는 데 그 기술적 의의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선행발명 2의 명세서의 도 2에는 테이퍼 존 내 나사산의 ‘마지막 골지름’이 ‘통상 나사산 골지름’보다 점차 크게 형성된 구조가 개시되어 있는바, 이는 구성요소 3의 경계부의 나사산 골지름의 구성과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2의 명세서에는 “테이퍼 존에 있어서 나사골이 축부로부터 약 1.1P 내지 2P인 거리에서의 최소 나사골지름부터 거의 축부단의 직경까지 연속적으로 테이퍼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볼트 나사골 테이퍼를 최대 그립 평면으로부터 약 1.6P 내지 1.1P 특히 약 1.75P의 범위로 형성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 테이퍼는 충분한 내피로강도를 유지하고 파스너 길이를 단축하여 효과적인 경량화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는 테이퍼 존의 내피로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효과는 구성요소 3과 같이 테이퍼 존 내의 나사산에 가해지는 집중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달성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③4항 정정발명은 콘크리트보강용 이형봉강의 연결단부 가공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1도 계수부를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및 그 계수와 그 계부수의 형성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두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또한 선행발명 2는 항공우주 산업에 사용되는 경량 파스너에 관한 것으로, 볼트 나사골의 테이퍼 존의 설계를 통해 충분한 내피로강도를 유지하고 파스너 길이를 단축하여 효과적인 경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바, 나사의 결합력 강화 및 경량화는 사실상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과제이고, 나사부 구성 역시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나사부의 테이퍼 존 구성을 이형봉강의 나사부 설계에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나아가 선행발명 2를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들의 형상만을 변경하면 충분하므로, 선행발명 1, 2를 결합함에 있어 선행발명 1의 핵심적인 기술적 구성을 변경하거나 구조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고, 선행발명 1, 2에 그러한 결합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기재도 없다.

키워드: 특허, 특허법 29조 2항, 진보성, 콘크리트보강용 이형봉강